1996. 06. 22 제정
1999. 02. 27 개정
2004. 01. 31 개정
2007. 12. 08 개정
2021. 11. 26 개정

(사)한국작가회의 정관

(사)한국작가회의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재지)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약칭 '작가회의', 영문 'Writers Association of Korea')라 하며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둔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자유실천문인협의회와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 문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문학 창작과 문학 발전을 위한 사업
2. 민족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3. 문학인의 권익 옹호와 복지를 위한 사업
4. 문학예술 정책 개발 사업
5. 민주적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문학의 청산 및 한국문학의 가치 확산과 교육을 위한 사업
6. 문예지 발간 및 문학 관련 출판사업
7.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8. 재외 동포의 문학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
9.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4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수사업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 외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및 가입절차)

①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문인 중 주소지 소속 지회에 우선 가입한 회원으로서 신입

회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이 부결된 때에는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 회원이나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소지 소속 지회가 없는 경우에는 직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법인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정관과 각종 규약 규정 준수의 의무
②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의 의무
③ 회비 납부의 의무

제8조(탈퇴,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명) 본 법인의 회원은 탈퇴의 자유를 갖는다. 단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회원의 탈퇴는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한된다. 자격상실, 자격정지 또는 제명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자격상실 : 회원이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한 자. 단 자격을 상실한 자는 그날로부터 1년 후에 재가입원서를 낼 수 있다.
② 자격정지 및 제명 : 본 회의 정관을 위배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자는 본인의 소명 절차를 거쳐 윤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로써 자격정지 및 제명을 결정한다.
③ 자격 정지된 자는 6개월 후, 제명된 자는 1년 후에 재가입원서를 낼 수 있다.

제3장 임원과 명예이사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9조(임원) 본 법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부이사장 5명 이내
③ 사무총장 1명
④ 이사 70명 이내
⑤ 감사 2명
단 법원 등기 이사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12명으로 하며, 등기 이사와 비등기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동등하다. 등기 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이사장·부이사장은 한국작가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 총회 추인 절차를 밟는다.

② 사무총장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회 불참자는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권 유무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는 회원들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감사 상호 간,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회원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임원의 권능)
①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지명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 및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사무총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감사의 권능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위 제①호와 제②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 위 제③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와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고문·자문위원) 본 법인에는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지위와 권능은 다음과 같다.
① 고문은 본 법인의 이사장(회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장의 추대와 이사회의 의결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고문단 회의를 통해 이사회와 총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고문의 임기는 종신직을 원칙으로 하되 본 법인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법인의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역임한 자 중 2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임기는 임원에 준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성원) 총회는 위임을 포함한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임장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한다. 단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정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정관 제11조 제⑤항 제4호(4. 위 제③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을 기재한 회의 소집 서면 통지서를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따로 선출된 자가 된다.

제15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본 법인 최고 의결기구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 사항

제17조(총회의결의 제척 사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회원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이사회

제18조(구성 및 성원)
① 이사회는 총 70인 이내로 한다.
②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및 각 상설위원장, 민족문학연구소장, 분과장, 지회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지회는 1명의 지역 이사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외 이사는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추천 방식 등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③ 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온라인 또는 화상 출석 포함)으로 개의한다.

제19조(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연 4회 이상
2.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정관 제11조 제⑤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장은 이사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이사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때에는 구두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출석(온라인 또는 화상 출석 포함)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이사회의 권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집행하거나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가 위임한 사항
②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정관의 변경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⑥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총회 소집 및 부의할 안건의 예비조절에 관한 사항
⑧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⑨ 기타 중요 사항

제6장 상설위원회, 부설기구, 분과, 지회, 지부

제22조(상설위원회)
① 본 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유실천위원회, 작가편집위원회, 국제위원회, 평화인권위원회, 신입회원심의위원회, 회보편집위원회, 연대활동위원회, 통일위원회, 문인복지위원회, 윤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디지털콘텐츠위원회, 젊은작가포럼을 상설위원회로 둔다.
② 상설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및 약간 명의 집행부서장을 둘 수 있다.
③ 각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임명하며 각 위원회의 필요 직책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각 상설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가 의결한다.
⑤ 상설위원회의 집행부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⑥ 상설위원회의 신설과 해소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23조(상임집행위원회)
① 본 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이사장이 구성·소집하며 사무총장과 약간 명의 부이사장, 분과장, 상설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상임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업을 집행한다.

제24조(부설기구) 본 법인 산하에 부설기구로 민족문학연구소를 둔다. 민족문학연구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5조(장르별 분과)
① 본 법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분과, 시조분과, 소설분과, 어린이청소년문학분과, 평론분과, 다원문학분과를 둔다.
② 각 분과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임명하며 각 분과의 필요 직책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각 분과의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가 의결한다.
④ 각 분과의 집행부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⑤ 각 분과의 신설과 해소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제26조(윤리위원회) 본 법인의 정관과 작가의 사회·도덕적 책무를 지키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의결하며, 11인 이내 홀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윤리위원회에는 성폭력대책팀을 둔다.
③ 윤리위원회는 본 법인의 정관을 위배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회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다. 이때 정관 위배 및 품위 손상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본 법인의 원활한 선거 사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한다.
② 위원은 25인 이내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지회 및 지부) 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지역과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부를 둘 수 있고 그 조직과 운영 및 인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및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0조(세입 등) 본 법인의 세입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익금,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단 정부 및 대기업의 보조 또는 후원금은 본 법인 총세입의 50%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회계 연도) 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32조(예산편성 및 장기차입)
①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 법인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본 법인은 매 회계 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감사)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 및 일반 사업에 대한 사항을 상하반기 각 1회씩 감사하고 그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34조(보수)
① 본 법인의 실무집행 역할을 맡은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액의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사무처 직원과 기타 실무집행을 맡은 회원에 대한 일체의 보수는 사무처 운영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지급한다.

제8장 사무처

제35조(설치) 본 법인의 제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36조(구성과 운영)
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사무국장 등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원은 사무총장이 선임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사무처 직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는다.

제9장 보칙

제37조(법인의 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사업실적 등의 보고) 본 법인은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②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와 수지 결산서
③ 전년도 말의 재산 목록, 업무 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
④ 회원 현황

제40조(각종 운영 규정 및 규칙) 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1조(정관의 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회원들의 찬반 여부를 확인하여 응답자의 과반수가 개정에 동의한 경우 위임을 포함한 총회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1996. 6. 22.)로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개정된 정관도 위와 같다.

제2조 1996년 3월 24일 현재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 중 법인허가 신청서 제출 때까지 참가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한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정회원으로 본다.

제3조 구 정관에 의한 임원은 현 이사장과 1998년 3월 7일 총회에서 선출한 차기 이사장의 합의에 따라 1998년 3월 31일 이전에 임기를 종료한다.

제4조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1999. 2. 27)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구 정관에 의한 임원은 2004년 3월 31일 이전에 임기를 종료한다.

제6조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2004. 1. 31)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2007.12.8)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8조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2021.11.26)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임원의 임기는 구 정관을 따른다.